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27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주호영·천하람·김종양

김은혜 • 이헌승 • 김소희

안상훈 • 윤상현 • 서명옥

강명구 · 고동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하고 있음.

한편, 시·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하고,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4(보험 등의 가입) ①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.
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
- 2.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
- 3.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
- 4.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 및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
- 5.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
- 6.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
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, 가입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지사 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4(보험 등의 가입) ① 소 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 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.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.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활안전활동 4.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 및 차량 및 물건등의 제거 또는 이동 5.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 6.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급조기원에 따른 보험 또는 공

제16조의4(소방자동차의 보험 가 제16조의5(소방자동차의 보험 가 입 등) (생 략)

제16조의5(소방활동에 대한 면책) (생략)

<u>제16</u>조의6(소송지원) (생 략)

제의 종류, 가입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입 등) (현행 제16조의4와 같 음)

제16조의6(소방활동에 대한 면책) (현행 제16조의5와 같음)

제16조의7(소송지원) (현행 제16 조의6과 같음)